

교외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

1. 근로 후 반드시 근로한 내용을 출근부에 상세히 입력할 것이며, 입력한 근로내용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수령이 가능함을 숙지하고 입력하지 않은 시간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을 동의합니다.
2. 근태 문제 발생시, 교외국가근로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국가근로장학생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
3. 국가근로장학금은 재학 중에만 수혜 가능함을 숙지하였으며, 학적 변동(휴학, 자퇴, 졸업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속기관 장학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를 중단해야 함을 동의합니다.
4. 허위 및 부정근로 등의 사유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장학금을 반납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생 자격이 제한됨을 동의합니다.
 - 허위근로 : 부정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2년(4개 학기)
 - 대체 및 대리근로 : 부정근로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(2개 학기)※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
5.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· 업무처리기준, 소속기관 자체기준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.

본인은 상기 내용을 모두 동의하며

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3년 07 월 일

소속대학	
학 부	
학 번	
학년 학기	
연 락 처	
근로가능시간	
서 약 자	(서명)